

# 부품·소재신뢰성보험 인수규정

제 정 : 2003. 3. 28

1차개정 : 2005. 9. 23

2차개정 : 2007.10. 10

3차개정 : 2008. 3. 25

4차개정 : 2010. 4. 2

[5차개정 : 2010. 7. 6](#)

**제 1조(목적)** 이 규정은 [무역보험](#) 관련법규 및 업무방법서에 따른 부품·소재신뢰성보험의 인수 업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(적용원칙)** 인수업무는 [무역보험](#) 관련법규(이하 업무방법서를 포함한다) 및 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·령등(이하 “부품·소재특별법령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되 [무역보험](#) 관련법규 및 부품·소재특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 3조(부보가능기업)** 이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신뢰성인증(평가)을 받은 부품·소재를 제조, 생산하는 기업(이하 “인증기업”이라 칭함)
- 2.부품·소재특별법령의 부품·소재전문기업(이하 “전문기업”이라 칭함)
- 3.부품소재특별법령의 부품·소재를 제조, 생산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국산 부품·소재의 수요촉진과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담당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·소재기업

**제 4조(부보가능 부품·소재)** 이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부품·소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인증기업이 생산하는 신뢰성인증(평가)을 받은 부품·소재 및 그 생산기업이 이와 동일한 제조공법, 재질 등으로 생산하는 부품·소재(이하 “인증부품·소재”라 칭함)
- 2.인증기업이 제1호의 부품·소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인증기업의 인증받지 않은 부품·소재
- 3.전문기업이 생산하는 부품·소재(이하 “전문기업부품·소재”라 칭함)
- 4.기타 부품·소재신뢰성보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수담당이사가 인정하는 부품·소재

**제 5조(담보손해의 종류)** 제1조의 부품·소재신뢰성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부품·소재보증책임
2. 부품·소재배상책임
3. 부품·소재회수비용

**제 6조(담보손해의 구성 및 운영)** ①이 보험은 기본담보(부품·소재보증책임)와 선택담보(부품·소재배상책임, 부품·소재회수비용)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② 보험계약자는 기본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담보의 하나 또는 전부를 가입할 수 있다.
- ③ 선택담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일담보지역의 기본담보에 먼저 부보하여야 한다.

**제 7조(담보지역)** ① 제6조의 담보손해는 담보지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② 담보지역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수담당이사가 정한다.

**제 8조(컨설팅대상 부품·소재)** ①전문기업 부품·소재는 신뢰성평가(인증)센터가 실시하는 부품·소재의 품질 및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수립·유지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컨설팅(이하 “컨설팅”이라 칭함)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신뢰성 관련 인증 보유 등 양호한 품질시스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면제할 수 있다.
- ③ 기타 컨설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인수담당이사가 정한다.

**제 9조(보상한도의 책정)** ① 부품·소재 및 생산기업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담보손해별 최대책정 가능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한도를 책정한다.

- ② 동일기업에 대한 최대책정가능 보상한도에 관한 사항은 인수담당이사가 정한다.

**제 10조(보험계약의 체결)** 보험계약자가 부품·소재신뢰성보험 청약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후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한다.

**제 11조(재보험출제)** 보험계약에 의해 인수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보험자에 출제할 수 있다.

**제 12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"부품·소재신뢰성보험 인수요령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이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)

이 규정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3)

①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“신뢰정보험 인수요강”은 폐지한다.

부 칙(4)

①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“신뢰정보험 인수요령”은 “부품·소재신뢰정보험 인수요령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.

부 칙 (5)

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